

규제영향분석서

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<목 차>

1.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취소(강화, 안 제17조)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산림청	작성 자	이름	신건섭
	담당부서 (과)	산림정책과		직급	행정주사
	국장	전범권		연락처	042-4841-4132
	과장	이종수		이메일	gsgod@korea.kr

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		
	2.규제조문	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7조		
	3.위임법령	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3호		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2017.6.1.~7.10 (예정)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39조 개정('16.5.24)으로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감축실적(크래딧)형 산림탄소상쇄를 배출권거래제의 외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-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에 준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두 제도의 등록취소 사유의 차이로 인한 산림탄소상쇄사업자의 사업추진상의 혼선방지 및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신뢰성 제고 *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(제18조)		
	7.규제내용	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에 “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”와 “기타 산림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를 추가하여 규정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산림탄소상쇄사업 사업자 산림탄소센터		
	9.기대효과	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등록취소사유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두 제도의 연계 활용 시 산림탄소상쇄사업자의 등록취소 관련 혼선방지		
규제의 적정성	10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 (자동입력)	중기영향평가 (자동입력)	경쟁영향평가 (자동입력)
	11. 비용편익 분석(정성 분석)	비용분석 대상이 아님		
기타	11. 일 몰 설 정 여부	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는 일정기간마다 산림탄소상쇄사업, 배출권거래제도,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규제의 재검토 필요 (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기 포함됨)		

〈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)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17조(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.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</u>
<u><신 설></u>	<u>5. 기타 산림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39조 개정('16.5.24)으로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감축실적(크래딧)형 산림탄소상쇄를 배출권거래제의 외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
-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'17.4월말 기준 110건(거래형 55, 비거래형55)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 등록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형 사업은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으로 추진예정임
-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를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요건을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령의 외부사업 등록취소 사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업무추진 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에 배출권거래제의 “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” 제18조(농식품부 고시)의 승인 취소사유에 준하여 “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”와 “기타 산림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를 추가하여 신설하려는 것임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- 입법예고 이후 수정·보완 필요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산림탄소센터	- 의견없음	
부처 등 의견조회 (‘17.5.18~5.29)	- 중앙부처, 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“의견 없음”확인	

3. 기대 효과

-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요건을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령의 외부사업 등록취소 사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두 제도의 등록취소 요건의 차이로 인한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사업추진상의 혼선방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함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를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으로 등록 시 적용되는 “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” 제18조에 외부사업의 승인취소 사유로 “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”와 “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”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며
- “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”까지 사업등록을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고, 산림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·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국제기준 정합성	일몰 설정 여부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여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경쟁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중기영향평가 : 해당없음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: 해당없음
- 국제 기준 정합성 : 해당없음
- 일몰설정 여부 :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

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는 일정기간마다 산림탄소상쇄사업, 배출권거래제도,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규제의 재검토 필요 (현행 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기 포함됨)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 : 해당 없음

○ 타법사례
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제정된 “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” 제18조에 외부사업의 승인취소 사유로 “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”와 “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를 포함하고 있음

【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- 농식품부 고시

제18조(승인 취소)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
3. 외부사업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 취소를 요청한 경우
4.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4. 비용편익 분석 : 해당없음

비용 편익분석 : 정성분석

(정성)제목	
분석	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산림탄소상쇄사업자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용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발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원하고 있고,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 기 운영중인 규제이므로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

○ 규제 차등화 방안 : 해당 없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는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산림탄소센터가 산림청장의 청문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기존의 행정력으로 가능하고,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재정적 집행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「탄소흡수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 부처 및 지자체 의견 조회 ('17.5.18.~5.29.)
- 「탄소흡수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(2017.6.1.~7.10 예정)

2. 향후 평가계획

- 산림탄소센터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시 산림청장의 청문

절차를 거치고 있어 개별사업별 취소시 점검이 가능하며, 「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후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3. 종합결론

- 산림탄소상쇄사업자가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발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배출권거래제에 외부사업으로 활용 시 배출권거래제의 “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” 제18조에 따른 승인취소 사유를 적용받게 되므로
-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요건을 동 지침 제18조에 따른 외부사업의 승인취소 사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두 제도의 등록취소 요건의 차이로 인한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사업추진상의 혼선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이 필요함